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!

그리고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용산구 제2선거구, 노식래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

서울특별시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내용은

입법·법률고문의 위촉자격 범위를 확대하고

고문료 중 법률자문료를

1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.

○ 현행 조례에서

“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” 로 제한하고 있는
입법·법률고문의 자격 범위를

“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” 로 확대함으로써
점차 다양해지는 자문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
민간기준 자문비용의 약 50% 수준인 현행 자문료를
약 3분의 2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
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기타 자세한 내용은

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